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 1. 21.(화) 10:00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박병천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5년 1월 10일

○ 회부일자: 2025년 1월 14일

3. 제안이유

○ 2025년부터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정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청 관할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용어 정의(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5조)

○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연수 및 교육(안 제6조)

○ 실태조사(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시행규칙(안 제9조)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안 이유 검토

-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임
- 정부는 2017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혁신’ 정책의 핵심 교육공약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후,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로 이어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저출산에 따른 연구구조 변화’, ‘디지털 세대의 변화된 학습 성향’, ‘사회적 불평등·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재상의 필요성 대두’와 같은 시대변화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적 요구에 근거하여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을 위한 주요 교육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¹⁾
- 교육부는 2018년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단위 고교학점제의 모형을 만들었고, 2020년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한 후 일반고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2021년 2월 17일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과 같은 해 8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음

1)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138쪽 (2022. 7.)

〈표 1〉 교육부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로드맵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2020년~)		⇒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 (2022년~)		⇒	일반계고 단계적 적용 (2022~2024년)		⇒	전체 고교 전면 적용 (2025년~)		
	기반 마련 ~'21		운영체제 전환 '22			제도의 단계적 적용 '23 '24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25~		
수업량 기준	단위		단위 (특성화고: 학점)			학점			학점		
총 이수학점	1~3학년 204단위		1학년 204단위		1학년 192학점		1학년 192학점		1학년 192학점		
			2학년 204단위		2학년 204단위		2학년 192학점		2학년 192학점		
			3학년 204단위		3학년 204단위		3학년 204단위		3학년 192학점		
연구·선도학교 비중*	55.9%		84%			95%			100%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		
책임교육	준거 개발		교원 연수 시도·학교 준비			공통과목(국어, 수학, 영어)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전 과목 미이수제 도입		
평가제도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공통, 일반선택과목 9등급 병기)									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제 (공통과목 9등급 병기)	

※ 자료출처: 교육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 (202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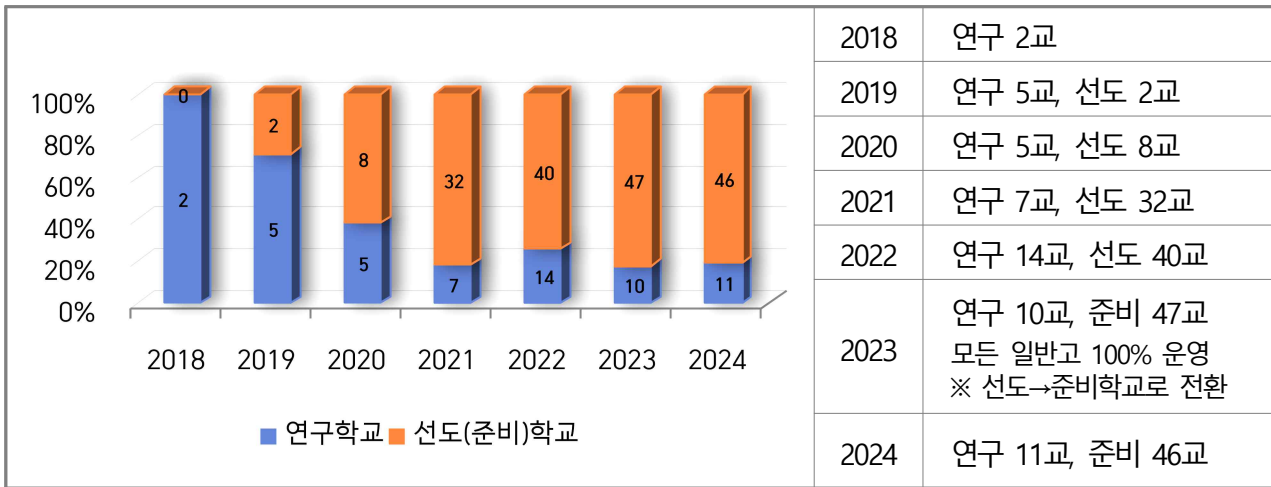
- 충청북도교육청도 2018년 연구학교 2교를 시작으로 2019년 12교, 2020년 21교, 2021년 65교, 2022년 80교의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였고, 2023년과 2024년에는 일반고와 직업계고 전체 83교를 대상으로 연구·선도·준비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맞춤형 학업 설계, 진로 지도 등 효율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음

〈표 2〉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추진 경과

연도	내용	비고
2018 ~	충북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2020~2023	충북 고교학점제 선도(도약)지구 지원 업 운영	마이테고 학점제 도입 (2020)
2021~2022	충북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사업 추진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 (2022)
2023~2024	충북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사업 추진	일반고 학점제 도입
2025	모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표 3〉 고교학점제 연구·준비(선도)학교 현황

1. 일반고



2. 직업계고 선도(연구)학교 운영 현황

연도	운영현황	비고
2019	■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2차) 5개교 선정 (연구학교: 1교, 선도학교: 4교)	연구학교: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선도학교: 충북반도체고, 충북에너지고, 청주하이텍고, 충주공고
2020	■ 직업계고 학점제 선도학교(3차) 3개교 추가 선정 (연구학교: 1교, 선도학교: 7교)	추가선정: 청주공고, 충북공고, 청주농고
2021	■ 직업계고 학점제 선도학교 18개교 추가 선정	연구학교: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선도학교: 연구학교를 제외한 25교
2022	■ 직업계고 학점제 선도학교 26교 운영 ※ 연구학교→선도학교 전환	모든 직업계고(26교) 선도학교 운영
2023	■ 직업계고 학점제 선도학교 26교 운영	
2024	■ 직업계고 학점제 선도학교 26교 운영	

- 고교학점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 정책으로 각 시도교육청 별 지역의 교육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교육청은 강원, 경기, 경남, 인천, 전남, 제주특별자치도 6곳 임

〈표 4〉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2025. 1. 기준)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개정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조례	2023. 8. 4.	일부개정
2	경기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2020. 7. 15.	타법개정
3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2021. 5. 6.	제정
4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2023. 4. 11.	제정
5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2023. 12. 29.	일부개정
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24. 5. 22.	일부개정

- 이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함께 향후 충청북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학교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운영해 온 고교학점제 연구·선도·준비 학교를 통하여 확인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으로 담아 제도화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항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에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업 및 진로·적성 설계 역량 증진과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여 본 조례 제정의 취

지와 필요성을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조는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근거하여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한 것으로 타당한 규정이라고 사료됨

○ 안 제3조에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교육감의 책무 사항으로 규정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호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을 강조한 본 조항은 타당한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4조에는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초·중등교육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방향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한 본 조항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운영 정책과 세부 추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타당한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5조에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초·중등교육법」 제48조의2제2호에 따르면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충청북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2024년 3월 20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어,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와 조직 구성 및 운영, 주요 기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은 본 조항은 타당한 규정이라고 사료됨

○ 안 제6조는 교원과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실현을 지향하고 있는 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이해와 그에 부합하는 학과 선택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상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마련이 요구되며,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에 따른 고교학점제 교과별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과별 교원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조항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7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충청북도교육청은 지금까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준비 학교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왔지만,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적용 대상 및 교과 개설, 수업량 등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와 문제 상황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되며,
- 궁극적으로 고교학점제가 2022 교육과정과 함께 학교 교육현장에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고교학점제 운영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고교학점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항은 타당한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8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유형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생 맞춤형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과 개설 및 교육적 실효성을 담보할 내실있는 운영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내 대학 및 교육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항은 타당한 규정이라 사료됨

다.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고교학점제를 통한 학생 맞춤형 학업 및 진로 교육 중심의 고교교육 재구조화가 2022 교육과정 속에서 학교의 학사운영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시기성 측면에서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함께 고교학점제의 학교 교육현장 안착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은 총 본칙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칙 조문에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 정의, 교육감의 책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 수립·시행,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음
- 조례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들은 앞서 조문별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전체적인 조문 체계도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법리적 측면에서 위배 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 조례 제정 입법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된 바, 본 조례안은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 다만, 충청북도교육청은 본 조례 제정에 근거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 역량과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 수강, 학교 교육활동과 진로의 연계성 강화, 지역 내 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온-오프라인 연계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시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